

* 반드시 공모 신청 매뉴얼을 확인·숙지하신 후 작성바랍니다.

『2026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』

유형1. 미술콘텐츠-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

공모 신청 매뉴얼

[전시공간]

매칭신청서 작성안내

- (양식) 신청서식은 임의로 변형 불가하며, 일부 항목에 대해 양식표 추가 가능
- (작성) 본문은 휴먼고딕 10pt, 행간 160% / 파란색 글씨는 삭제후 제출
- (날인) 직인 필수(서명 불가)
- (제출) 반드시 한글 파일(HWP)로 작성 및 제출, PDF 제출 불가
- (파일명) 전시공간 매칭신청서_신청주체명

I. 지원 필수조건 및 예시

<전시공간 운영단체 필수 조건>

- ① 서울 외 지역에 자체 보유 전시공간이거나 위탁 운영 전시공간이 있는 단체(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)
- ② e나라도움 운용 및 가능단체(교부신청, 지출·정산, 회계검증)
-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 단체
- ④ 총 국고보조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성 자부담금으로 편성 및 운용이 가능한 단체
- ⑤ 설치·철수·휴관일 제외 사업기간 내 연속 30일 이상 전시 개최
- ⑥ 전시 개최기간 동안 전시장 지킴이 배치, 운영, 전시 홍보 진행

<전시공간 면적 조건>

- 실내를 기준으로 본 사업에서 지정하는 각 전시공간 면적 이상의 전시공간을 보유한 단체
- 대상, 공간면적별로 매칭 가능한 미술콘텐츠 규모 상이

지원대상	미술콘텐츠비	전시공간 필요 면적	신청 가능 국고보조금	자부담금
문예회관 제외 공간	40,000,000원	최소 50평(165㎡) 이상	50,000,000원 이상	10% 이상
	50,000,000원	최소 80평(264㎡) 이상	62,500,000원 이상	
	60,000,000원	최소 100평(330㎡) 이상	75,000,000원 이상	
	70,000,000원	최소 150평(495㎡) 이상	87,500,000원 이상	
*문예회관	40,000,000원	최소 50평(165㎡) 이상	50,000,000원 이상	
	50,000,000원		62,500,000원 이상	
	60,000,000원	최소 100평(330㎡) 이상	75,000,000원 이상	
	70,000,000원	최소 150평(495㎡) 이상	87,500,000원 이상	

*'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'에 등록된 문예회관 기준

예시	미술콘텐츠비 (콘텐츠 제작자 용역비)		전시공간 필요 면적	신청 전시공간/면적	가능 여부	비고
1	콘텐츠 1	4,000만원	50평 이상	미술관/80평	가능	
	콘텐츠 2	4,000만원				
	콘텐츠 3	5,000만원	80평 이상			
	콘텐츠 4	5,000만원				
2	콘텐츠 1	5,000만원	50평 이상	문예회관/50평	가능	문예회관 면적 확인
	콘텐츠 2	4,000만원				
	콘텐츠 3	4,000만원	100평 이상		불가능	최소 평수 미충족
	콘텐츠 4	6,000만원				
3	콘텐츠 1	7,000만원	150평 이상	미술관/150평	가능	
	콘텐츠 2	7,000만원				
	콘텐츠 3	7,000만원				
	콘텐츠 4	7,000만원				
4	콘텐츠 1	6,000만원	100평 이상	미술관/70평	불가능	최소 평수 미충족
	콘텐츠 2	4,000만원	50평 이상		가능	
5	콘텐츠 1	5,000만원	80평 이상	미술관/50평	불가능	최소 평수 미충족
6	콘텐츠 1	5,000만원	50평 이상	문예회관/50평	가능	문예회관 면적 확인

<전시공간 예산 편성 조건>

- ① 미술콘텐츠비는 4·5·6·7천 만원 편성
- ② 국고보조금은 최소 5천 ~ 최대 3.5억원 내 선택
- ③ 전시공간 면적 50평인 문예회관이 신청하는 경우, 미술콘텐츠비는 50,000,000원 이하 항목중 선택 가능
- ④ 총 국고보조금의 10%이상을 현금성 자부담으로 편성 및 지출·정산

<예산 기준표(전시공간 제공자)>

목	세목	지급유형 및 단가	예산편성 불가능	
인건비 (110)	기타 인건비 (0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시장지킴이 사례비 -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등 지급 고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내부인력 활용 시 비용처리 불가 ● 근무시간, 요일 상관 없이 3개월 연속 동일인 사용 불가 	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시급 (1시간) 10,320원</td> <td>일급 (8시간) 82,560원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 산출액은 원천세, 사회보험 등 포함 > 비용 산정은 근로기준법 준수 		시급 (1시간) 10,320원
시급 (1시간) 10,320원	일급 (8시간) 82,560원			
운영비 (210)	일반용역비 (1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술콘텐츠 제공자 용역비 <table border="1"> <tr> <td>미술콘텐츠 4.5-6.7천만 원 정액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 총 국고보조금의 80% 이내 > 등록 미술콘텐츠는 공고문 링크 참조 	미술콘텐츠 4.5-6.7천만 원 정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콘텐츠비 내 상세내역과 일반용역비 산출내역 중복 불가
		미술콘텐츠 4.5-6.7천만 원 정액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일반용역비 - 전시 홍보, 광고, 체험프로그램 운영대행, 영상제작 대행 등에 필요한 대행용역비 - 기타 전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행용역비(협의) - 기타대행용역비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의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콘텐츠비 외 인적·물적 거래 불가 ● 콘텐츠비 내 상세내역과 일반용역비 산출내역 중복 불가 *전시공간연출 일체비용, 작품운송, 보험, 작가비 등 편성불가 ● 인적용역과 거래 불가 			

<그외 사업비 지원 불가항목>	
- 선정단체/기업 경상비 : 소속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구입, 공과금, 시스템 구축비 등	
- 자본적 경비 :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구입 등	
- 업무추진비 : 간담회 등을 위한 식음료비, 업추비 등	
- 전시 준비비 : 장소 답사, 준비 등을 위한 교통, 숙박, 유류대 등	
- 기타 : 전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, 보조금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	

<국고보조금 사용제한 업종>	
유형	룸살롱, 카바레, 단란주점, 노래방, 맥주홀, 나이트클럽, 스탠드바, 유흥주점 등
자율지정 제한	산후조리원, 양품점, 회원제, 표구사, 불링장, 인형 및 완구점, 수제용품점, 혼수전문점, 상담실, 레포츠(스포츠)클럽, 종교상품점, 악기, 종교단체, 아동복, 운동경기, 레저용품, 총포류, 골동품, 예술품, 방문판매, 약세사리, 예식장, 장의사, 장례식장, 운동경기관람, 피아노, 피부미용, 스포츠마사지, 학교등록금, 무속, 철학관, 복권, 기성복, 학습지, 다단계, 수영장, 결혼서비스, 이벤트, 묘지, 화방, PC게임방, 자석요, 체형관리, 유치원, 메리야스 등
기타	성인용품판매점, 안마시술소, 이·미용실, 헬스, 사우나, 골프장, 당구장, 비디오방, 전화방, 카지노, 전자오락실, 게임방, 복권방 등

II. 매칭 조건

<지역>

- 서로 다른 지역(시·군 기준) 간 전시공간-제공자 매칭 가능

- 신청 공간에서 기존에 전시했던 이력이 없는 미술콘텐츠와 매칭 가능

전시공간	미술콘텐츠 제공자	매칭 가능 여부
○○문예회관(포항시)	미술콘텐츠 제공자 주소지 : 포항시	불가능
예경미술관	예경미술관에서 콘텐츠의 개최 이력 존재	

<미술콘텐츠>

- 최대 4곳의 서로 다른 제공자와 최대 4건의 미술콘텐츠를 매칭 가능
- 하나의 전시공간에는 1건의 미술콘텐츠만 개최 가능(파티션으로 내부를 나누더라도 동일하게 1개의 공간으로 간주)
-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전시공간을 보유 단체는 전시기간 내 각각의 전시공간에서 미술콘텐츠 동시 개최 가능(*예시 4번 참고)

예시	전시공간	콘텐츠 제공자	콘텐츠	가능	불가능
1	A전시실	A	▲	▲, ●, ■, □ 모두 매칭 가능	-
		B	●		
		C	■		
		D	□		
2	A전시실	A	▲	-	▲, ●, ■ 중 1개만 매칭 가능
			●		
			■		
3	A전시실	A	■	■ 매칭 가능	-
*4	A전시실	A	▲	▲, ● 매칭 가능	-
	B전시실		●		

<콘텐츠 조정>

- 공모 신청서 내용 기반 운영이 원칙(전시 핵심 콘텐츠 변경 불가)
-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변경해야 할 경우(작품파손 등) 미술콘텐츠의 70%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,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승인 불가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미술콘텐츠의 내용, 규모, 금액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, 전시공간과 미술콘텐츠 제공자 간 사전협의 후, 조정 가능 여부를 예술경영지원센터에 확인하고 매칭 결정(코어콘텐츠는 변경 불가)
- 미술콘텐츠의 내용, 규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, 예술경영지원센터 승인 필수(*승인 불가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)
- 공모기간 내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사전 매칭 협의 권장
- 전시공간·미술콘텐츠 제공자 중복 지원 불가
- 본 사업의 총 지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, 콘텐츠 매칭 건수 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